

# 2024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1월 15일

대구광역시장  
(재)대구테크노파크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추진목적

-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한 신규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
- 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

### 사업내용

- 혁신(시)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기술 · 품질 · 시험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지원
-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

## 2. 지원대상 및 내용

### 지원대상

-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,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

## 지원분야

### ○ 지원 프로그램 단일 또는 중복 지원 가능

#### ① 혁신(시)제품 컨설팅 지원

- 혁신(시)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
-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
- 기업당 최대 12,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## ② 인증 지원

-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
  - 기술인증 : 신제품인증(NEP), 신기술인증(NET)
  - 품질인증 : 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(GR),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 소프트웨어(GS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품질보증조달물품, 소재·부품 신뢰성 인증, ICT 융합품질인증 등
  - 시험인증 :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
- 기업당 최대 4,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## ③ 지식재산권 지원

-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
  -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
  -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
- 기업당 최대 2,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
  - 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

## ■ 지원제외 대상(접수마감일 기준)
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
- 기업이 부도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3 및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
## ■ 혁신(시)제품 제도 안내

-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(또는 ‘제품+서비스’)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(시)제품으로 지정
- 기술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(제품, 제품+서비스)으로 평가 후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(<http://ppi.g2b.go.kr>)의 ‘혁신제품전용몰’에 등록
-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나,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·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(임시허가, 실증특례)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를 지정기간으로 함
- 지정분야
  - 혁신성장 지원 분야,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, 국민재난안전 분야 중 택 1(중복신청 금지)

구분	상세항목
1. 혁신성장 지원 분야	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(AI)
2. 국민생활문제 분야	안전, 환경, 건강, 복지, 교육, 문화, 치안
3. 국민재난·안전 분야	① 탄소중립 ②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③ 재난안전제품

※ 혁신(시)제품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혁신조달종합포털(<http://ppi.g2b.go.kr>) 참조

## 3. 신청방법

### ■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4. 1. 15(월) ~ 2. 23(금) [40일간]
- 접수기간 : 2024. 2. 21(수) ~ 2. 23(금) [3일간]

※ 신청마감일 ('24. 2. 23(금), 18:00)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

## 제출서류

구분	제출자료명	비고	
1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1부	붙임1
2	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1부	붙임2
3	사업자등록증	1부	
4	중소기업확인서( <a href="http://sminfo,mss.go.kr">http://sminfo,mss.go.kr</a> )	1부	
5	공장등록증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해당시
6	4대 보험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
7	2021, 2022 표준재무제표증명 ▶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,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	각1부	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

※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(PDF), 한글파일(HWP) 모두 E-mail 제출

## 신청방법

○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-mail 접수

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: [www.dgtp.or.kr](http://www.dgtp.or.kr)

-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 : [www.hittp.org](http://www.hittp.org)

○ E-mail 접수처 : [hibig51@dgtp.or.kr](mailto:hibig51@dgtp.or.kr)

※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부담

## 문의처

○ (재)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허준석 책임연구원(Tel. 053-757-3784)